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퇴직금 미지급시 형량 상향 및 반의사불벌죄 신설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188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퇴직금 미지급시 형량 상향 및 반의사불벌죄 신설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 출 일 : 2024. 6. 28.
3. 회 부 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하는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형량을 조정하는 한편, 해당 벌칙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퇴직금 미지급시 형량 상향 및 반의사불벌죄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벌칙 형량을 상향(2년 징역·2천만원 벌금→3년 징역·3천만원 벌금)하되, 해당 벌칙에 대해서는 피해 선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8조 제1항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8조(벌칙) ① 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벌칙) ① ----- ----- ----- -----.
1. 1의2.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신설>	1의3. 제5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의3. (생략)	1의4.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2부터 제3호까지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② 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 및 제3호----- -----

할 수 없다.	---
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0조(벌칙)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5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삭제>
3의2. ~ 17. (생략)	3의2. ~ 17.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55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 상당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의 근로계약이 끝날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 상당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¹⁾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²⁾

1) 「선원법」 제55조(퇴직금제도) ①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이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선원법」 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현재 이와 같은 벌칙 규정은 진정인의 처벌 의사 및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두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따른 범죄인지사례가 많아짐으로써 선원근로감독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등 사건송치에 소요되는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편,

실제 체벌사업주에게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거나 검찰의 지급지시에 따라 체불 퇴직금을 청산하는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현행 형사처벌은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촉진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최근 퇴직금 지급 위반 사례]

- (A지역 사례) 1건, 금액 미확정
 - ‘○○수산’(멸치권현망업)에서 근무한 어로장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선원법 위반으로 고소(‘23.11.28.)하여 수사한 결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볼 수 없어 ‘혐의 없음’으로 검찰 송치(‘24.3.6.)
- (B지역 사례) 1건, 15백만원
 - ‘○○○’(대형트롤어선)에서 근무한 선원 4명이 퇴직금 미지급(15백만원)에 대해 선원법 제55조 위반으로 고소(‘23.7.11.)하여 수사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24.5.7.)

이에 개정안은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되,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피해 선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反意思

3. 제5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不罰罪)³⁾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합리성을 높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사건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퇴직금 지급 의무의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퇴직금 등 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관성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①지난 18년간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를 도입·적용한 결과,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수준에서 금액 조정을 강요당하는 행위,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형사처벌을 면한 다음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등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⁴⁾⁵⁾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4) 그밖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체당금 제도와 연계하여 악용하는 사례도 있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체당금 지급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진정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협조를 받아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미지급임금이 남아 있음에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처럼 근로자가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불원의사는 번복할 수가 없으므로 실제 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체당금을 통해 본인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임.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제도 확대방안 연구」, 2016)

5) 문은영, 「임금체불' 사건'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중심으로」, 토론회-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공동주최 : 참여연대, 21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안호영·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2021.3.

②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는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체불을 범죄행위가 아니라 개인 사이의 단순한 채무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져와 근로기준법 준수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견해⁶⁾도 있으므로, 노사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의사불벌죄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관계기관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유사 입법례인 「근로기준법⁷⁾」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⁸⁾」 역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이행력 약화를 막기 위해 형량은 상향조정하되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권오성, 『임금체불죄에 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8
권오성,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주최 : 참여연대, 21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안호영·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2021.3.

7)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참고로, 정부는 2022년 7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구성하여 형벌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고, 제3차 개선작업으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벌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선원법」 등 14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19